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213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절차 마련과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하고, 동원명령과 이에 따른 비용 정산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안 제5조)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우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에 관한 계획,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관리에 관한 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 2)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요청할 수 있음

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등(안 제7조)

-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토록 함
- 2) 이 경우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절차를 거칠수 있음

다.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등(안 제10조)

- 1)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토록 함
- 2) 이 경우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절차를 거칠수 있음

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등(안 제1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신속하게 운송·동원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토록 함

마.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안 제23조)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바.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안 제28조)

- 1)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조직의 변경 등으로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음

사. 재난관리 재산 및 인력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45조, 안 제48조)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아.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51조)

시·도지사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52조)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해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하도록 함

차.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등(안 제53조)

-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신청 방법 등을 정해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 2)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국가자원통합 관리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말함

카. 동원명령(안 제55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함

타. 비용 정산기준 등(안 제56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 정산기준을 과세표준 또는 시가(時價)로 정함

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안 제57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은 자원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가상 훈련으로 하고, 관리기관은 실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동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하. 권한의 위탁(안 제60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지정 해제 등 위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물품의 대상)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기업 등이 소유하는 물품과 그 기관·기업 등이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기관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
5.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하여 단가계약이나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대상)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2조 각 호의 기관·기업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4. 그 밖에 제2조 각 호의 기관·기업 등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계 및 기구

제4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중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산하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중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에 관한 계획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관리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망관리정보) 법 제7조제1항에서 “공급업자의 현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공급망관리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공급업자의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2. 공급업자의 주된 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
3. 공급업자의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공급업자가 관리기관에 판매·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대여 또는 임대하려는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품목(재난관리물품의 경우에는 주요 원부자재의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를 포함한다)

나. 공급업자가 관리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용역의 종류 및 그 용역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품목

5.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공급업자의 생산·판매 규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급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보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일 것

2.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갖춘 공급업자일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긴급한 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일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송달[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지정에 따른 임무

4.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방법 및 지정 기간 등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생산·수리·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생산·수리·가공 또는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 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명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공급망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이를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폐업·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휴업·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 파산절차가 진행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소관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공급업자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일 것
2. 관할구역에 본점을 두고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갖춘 공급업자일 것. 다만,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할구역에 본점을 두고 있지 않은 공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의 긴급한 대비

· 대응 및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일 것

② 시·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송달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지정에 따른 임무
4.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방법 및 지정 기간 등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생산·수

리·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생산·수리·가공 또는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기술 개발을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공급망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이를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4조제1항에서 “폐업·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휴업·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 파산절차가 진행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소관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업을 하는 물류기업일 것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의4호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물류기업일 것
3.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서 물류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신속하게 운송·동원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갖춘 물류기업일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송달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지정에 따른 임무
4.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방법 및 지정 기간 등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물류시설: 물류시설명, 규모, 확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장비: 품목, 규격, 성능, 확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주요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의 연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의 연계 방법, 연계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류공동화의 추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 방법, 추진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입출고·재고관리 및 운송관리 등을 위한 재난관리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이를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9조제1항에서 “폐업·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휴업·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 파산절차가 진행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소관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등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제16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총괄자원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소속 공무원등에게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위임) 자원관리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재난관리자원의 사용·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자원관리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업무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사용·활용하게 하거나 사용·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관리기관의 분임)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이하 “분임자원관리관”이라 한다)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분임자원관리관으로 둔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이하 “분임자원출납관”이라 한다)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분임자원출납관으로 둔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제20조(관리기관의 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이하 “대리자원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대리자원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

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원출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이하 “대리자원출납관”이라 한다)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이하 “대리자원운용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대리자원출납관 또는 대리자원운용관으로 지정한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1절 재난관리물품의 통칙

제21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성질

가. 재사용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으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

나. 일회용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으로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

다. 소모성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분임자원관리관을 두거나 2명 이상의 자원관리관을 두는 경우 자원관리관과 분임자원관리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매겨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른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목록번호를 매길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목록번호의 지정 및 부여에 관한 업무를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관리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표준(이하 “기관표준”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기관표준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국가표준의 내용, 시행일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표준이나 국가표준을 정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표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준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표준이나 국가표준을 정하지 않고 해당 표준을 직접 사용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요 물품의 표준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른 산업표준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검사기준 또는 기술기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

제23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상급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상급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

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제출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변경) 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轉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최종 제출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상급기관등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이하 “비축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정수책정기준: 관리기관의 기능·업무량 및 관리 인원, 관리기관별

관리 대상 재난의 발생빈도 및 규모, 이재민의 발생 규모,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정수책정기준 등

2. 내용연수: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年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내구연한, 공급업자가 정한 내구연한 등

3. 재고관리: 사용 빈도, 재고 유지의 필요성 등

② 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6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미리 협의한 후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안 및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재물조사 또는 특별재물조사 결과

2. 법 제59조에 따른 검사 결과

3. 제1항에 따른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안 및 그 사유서

③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기준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비축관리기준 등의 연구·개발 기관) ①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축관리기준과 제22조제2항의 국가표준 및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준 등의 연구·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하는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상급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는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이 교체된 경우 등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조직의 변경 등으로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시·군·구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법인의 재난관리물품에 한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입력하고, 그 증감(增減)의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및 품목
2. 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 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에 관한 사무의 위임 및 그 밖에 재물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같은 회계 내에서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원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해야 하고,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 명령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가격은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출급(出給)·반납·인도 및 수입(收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요 정비 대상 재난관리물품(이하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 시기·방법 및 부속품의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품의 수급계획은 제23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정비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정비기준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라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비할 수 있다.

④ 자원관리관(자원운용관을 포함한다)은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정

비할 때에는 해당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의 품명, 정비 기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보관 및 사용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관한 조치의 청구)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등은 예산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등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한다.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관한 조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조달물자일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할 것
 2.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제22조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난관리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3.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으로서 수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 ②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등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축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의2호에 따른 물류창고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비 또는 장치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품목
2. 재난관리물품의 속성

3. 재난관리물품의 통합 관리 여부

4. 그 밖에 재난관리물품의 사용·활용 환경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을 위한 조치)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등에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등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 및 비축시설

4.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등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한다.

제36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 명령)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출납해야 할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출납 시기

3. 출납해야 할 재난관리물품을 자원출납관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와 자원출납관에게 인도하는 자

② 자원출납관은 제1항에 따른 출납 명령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명령에 맞게 출납해야 한다.

③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동원 명령을 출납 명령으로 본다.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등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한다.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① 자원운용관은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 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자원운용관은 그 소속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 명령에 의한 출납 명령의 요청 및 사용에 필요한 절차 등은 그 동원이 끝난 후에 이행한다.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제39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하는 재난관리물품의 가격·용도, 교환 상대자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물품을 교환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은 그 응급조치가 끝난 후에 이행한다.

제40조(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하는 재난관리물품)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재난관리물

품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제41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①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이하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라 한다)이나 불용품(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을 일반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2회 이상 일반 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 입찰을 하지 않고 경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

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의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
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

④ 제3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제42조(재활용품의 관리·수리 및 처분) ① 조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수리·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75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난관리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⑤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려는 때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3조(불용품의 양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경위
3. 재난관리물품의 상태
4. 무상양여하는 사유

②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2. 관리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③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
3. 「재해구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시대피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44조(망실·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변상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관리기관에 불리하면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은 재난관리물품을 잃어버리거나 재난관리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했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발견했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또는 검사 대상이 아닌 관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은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

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제2항 단서에 따른 관리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등에 한정한다)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원 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관리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⑤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3항에 따라 감사원 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45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급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상급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

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제출한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 대상 재난관리재산의 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4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최종 제출한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한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상급기관등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유지 사항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관리재산의 종류 및 용도
2. 재난관리재산의 소유자

3. 재난관리재산의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 현황

4. 재난관리재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5. 재난관리재산의 사용 또는 활용 이력(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 이력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재난관리재산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매겨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재산의 분류에 따른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목록번호를 매길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목록번호의 지정 및 부여에 관한 업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급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

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상급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제출한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변경)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과의 협약이 만료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4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최종 제출한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한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상급기관등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유지 사항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기관·단체·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단체·법인의 명칭
2.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단체·법인의 본점 및 지점(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소재지와 연락처
3.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단체·법인의 역할 및 업무 내용
4. 동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인력의 규모
5. 재난관리인력이 활동하는 때에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재난관리물품 또는 재난관리재산(그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단체·법인의 재난관리물품 또는 재난관리재산을 말하며,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재난관리인력의 활동 이력(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 이력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단체·법인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매겨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법인의 분류에 따른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목록번호를 매길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목록번호의 지정 및 부여에 관한 업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51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하여금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52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록번호에 따라 부

여하는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2.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목록번호
3.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목록번호

②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을 읽는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를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 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단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보센터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심사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말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제54조에 따른 자격 이상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54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자격)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갖추 것

가. 공급망관리정보·재난관리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

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

다.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복제·저장 시설장비

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에 보관된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의 일자·시각 및 자취 등을 기록·관리하는 시설장비

마.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정보망과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하는 적정 규모의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보유헌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거나 정보의 처리·보관 및 전송 등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중계방식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을 갖추거나 유통·물류 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및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자에게 대한 상담이 가능한 사람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제55조(동원 명령) ① 법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른 동원 명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동원 명령을 받는 자
2. 동원 대상
3. 동원 사유
4. 동원 중 행동 요령
5. 그 밖에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의 수량 등 재난관리자원의 동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동원 명령을 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원 명령을 할 수 있다.

1.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통보
2.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통보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을 받은 자는 동원된 재난관리자

원의 현황을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6조(비용 정산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표준 또는 시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적용 시점은 동원 명령을 받은 당시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미리 협의한 비용 정산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④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이나 예비비 등으로 그 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1.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3. 「국가재정법」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자체 예산편성에 따른 예비비를 말함)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5.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57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은 자원통합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가상 훈련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실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동원훈련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하려는 경우 동원훈련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동원훈련의 참여 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동원훈련의 일시
2. 동원훈련의 장소
3. 동원훈련의 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동원훈련에 필요한 사항

④ 동원훈련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제3항에 따른 문서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원활한 동원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한 후 10일 이내에 동원훈련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8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① 기본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또는 재난관리인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적·인적자원에 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2.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3. 제4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제59조(검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공무원등을 지정하여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구분,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권한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소관 재난관리 자원의 공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의 송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제1호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한정한다)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실을 알리는 문서의 발송
6.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1호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한정한다)

제61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에 관한 조사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6.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제공 또는 공개

7.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6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6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자 및 제6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교육의 실시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46조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2.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③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49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및 동원 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④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하는 시·도지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관리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2. 제52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담당자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원관리관은 이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위임

2. 제18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사용·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3조(비용 정산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동원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바코드 등의 부착 및 정보 제공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관리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까지 제52조제1항에 따라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에 관한 사항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제5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당시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는 시설 또는 창고로서 제34조에 따른 비축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 또는 창고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비축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라 국가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본다.

②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이 영 시행 전까지 제54조에 따른 자격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망 관리정보를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법 제65조제2항 제1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나.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 제2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다.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 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라.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 제4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마.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 제1호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 제2호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연 락 처	(044) 205 - 5272